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4. 12 선고 2023가단25193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8.

판 결 선 고 2024. 4. 12.

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3. 2. 18.자 상속협의분할을 17,970,3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17,970,3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1에서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2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3. 2. 18.자 상속협의분할은 사해행위이므로 17,970,3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,970,3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한웅희

별지